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순자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241호
- 나. 제안자 : 이순자의원(찬성의원 25명)
- 다. 제안일자 : 2016년 5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바, 특히 자치법규의 질적·양적 증진은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자치법규 확대의 이면에는 실질적 규범력이 미흡하거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일관성, 상충방지) 확보의 미흡, 조례제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실효성이 부족한 자치법규의 양산은 자치법규에 대한 불신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자치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입법영향 분석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 대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시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나. 입법 평가의 대상과 평가 분석기준 및 평가의 시기를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이하 “시”)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자치법규 입법 현황

- 자치법규 제정권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시민의 참여의식 확대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11월 기준으로 조례와 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해 782개 자치법규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조례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2~300건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 입법활동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참고자료 1).
- 자치법규 입법활동이 매년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2002년 5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제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매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다.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입법평가 실시(안 제4조~제8조)

- 안 제4조는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과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추진계획에는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입법평가 실시 관련사항과 서울특별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포함해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입법평가의 대상과 분석지표, 평가의 시기와 자료제출 등 입법평가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안 별표에서 제시한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서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 시행 첫 해에는 대상 조례의

선정과 실제 평가과정에서 경험 미숙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 별표가 입법의 필요성과 조례의 유효성을 포함한 9개 분석항목에 30개 세부항목을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4개 항목(20개 세부항목) 111개 지표와 비교해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됨(참고자료 2).
- 201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라북도 익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충청남도 아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다만, 현재 별도의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4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기존의 입법절차와 평가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평가 관련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입법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부터 제13조)

-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입법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방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입법평가 기간 종료 후에 해촉되도록 되어 있어 입법평가 시행 주기를 고려할 때 임기는 2년 이내로 제한될 것임.
- 또한, 안 제11조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원활한 입법평가가 진행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이 기존의 입법평가 제도와 비교해 가장 큰 차별성은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13조와 같이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임.
-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평가 제도의 시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평가결과의 환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는 평가결과를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마. 종합의견

-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조례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또한, 자치법규 평가를 위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촉 위원이 1/2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평가 절차와 방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한 조례의 평가를 시장이 관련 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는 조치가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 형태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 또한,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와 각종 규제 심사, 비용추계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 법무담당관의 적정성 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검증과 사전평가를 거쳐 마련되는 것과 비교해 의원발의 조례안의 사전평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자칫 입법평가 결과가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시가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¹⁾에 규정된 자치법규 정비관련 조항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선행될 필요가 있음.

1) 제25조(자치법규 정비) 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의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입법 현황

('16. 11. 30. 기준)

구분		현행 자치법규	입법현황			
			소계	제정	개정	폐지
계		783	353	72	271	10
2016년	조례	533	282	60	213	9
	규칙	213	64	10	54	0
	훈령	28	6	2	3	1
	예규	9	1	0	1	0
계		715	315	62	245	8
2015년	조례	483	252	56	191	5
	규칙	196	55	3	49	3
	훈령	27	8	3	5	0
	예규	9	0	0	0	0
계		661	224	49	161	14
2014년	조례	432	146	36	103	7
	규칙	196	71	11	54	6
	훈령	24	5	2	3	0
	예규	9	2	0	1	1
계		626	224	46	172	6
2013년	조례	403	158	35	118	5
	규칙	191	61	10	50	1
	훈령	22	4	0	4	0
	예규	10	1	1	0	0
계		586	267	55	202	10
2012년	조례	373	210	45	157	8
	규칙	182	49	7	40	2
	훈령	22	3	0	3	0
	예규	9	5	3	2	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I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1. 입법수요 동향조사	
	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시민여론, 자체 필요 등)	
	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되는가	
	다. 어떻게 수집하는가	
	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라. 시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3. 입법의 필요성 조사	
	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의한 입법인가	
	마. 시민단체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의한 것인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4.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라. 계획된 기일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II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1. 헌법규정의 적합성	
	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다.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서울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 여러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자. 자치법규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러. 과태료 등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6. 경 제 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7. 시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시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라.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마. 시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효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시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	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2. 관계기관간의 협의	
	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서울시 내부기관간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라. 기타 협이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3. 관련위원회의 심의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4. 공 청 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 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하였는가, 생략한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시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구 분	심 사 항 목	평 가
IV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마. 시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